

보건복지 ISSUE & FOCUS

대북 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¹⁾

조성은
복지국가연구단 연구위원

-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1718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양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재 면제 통로가 있음.
-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시작하여 2021년 말 현재 9건의 승인 사례가 확인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엔 1718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긴급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승인과 불승인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는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이며 유효한 영역이므로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01. 들어가며

- ◆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포괄적 경제 제재의 완화를 꾀하던 북한은 2019년 2월 제2차 북미 회담 결렬,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등을 거치면서 대외적인 봉쇄 조치를 선택하여 내부 경제난과 물자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이 북한 경제 일반을 겨냥한 포괄적 제재로 변한 2016년 이후 북한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평양 주재 국제기구 상근자들을 철수시키는 등 대외적 고립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북한 내 물자 부족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 이 글은 조성은, 고경옥, 도경옥, 엄주현, 조영주(2021), 『대북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 연구』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 북한의 고립은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장기간 중단된 남북 간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

- 국제기구들이 협력하여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수준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는 전체 인구의 42.4%인 총 1090만 명이며,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발육이 부진한 아동은 2020년 기준 30만 명으로 전체 아동의 18.2%임(김경윤, 2021).
- 취약계층, 특히 아동의 영양 문제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향후 한반도 통합 이후 인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보편적 기본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임

02.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일련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을 압박하여 왔음.

-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결의 제1718호(2006), 제1874호(2009), 제2087호(2013), 제2094호(2013), 제2270호(2016), 제2321호(2016), 제2356호(2017), 제2371호(2017), 제2375호(2017), 제2397호(2017)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는 결의안을 연속하여 채택해 왔음.
 - UNSCR 2321호(2016)에서 ‘민생 목적’ 등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 효과를 높인 이후 2371호(2017. 8. 5.)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자원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375호(2017. 9. 11.)에서는 식물 및 의류 완제품 수입도 금지했으며, 2397호(2017. 12. 22.)에서는 식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북한의 수출입 길이 대부분이 막혔음(임소정, 2018).
 - 현재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는 개인·단체에 대한 제재, 외교적 제재,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 상품 제재, 운송 제재, 석유·금융 등 핵심적인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 등 표적 제재의 모든 유형이 사용됨.
 -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는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매우 강력한 제재로 분류됨.

◆ 국제사회는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재의 비의도적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인도적 피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

- 제재가 대상국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히 제재 대상국의 경제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이 중에서도 제재가 주민들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일반적으로 건강권은 경제 제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권리임.
 - 중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거나 약품과 백신 수입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전염병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명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

- ◆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이를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안보리가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68년 남로디지아에 대한 포괄적 제재 결의부터임.²⁾
 -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례 없이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안보리의 제재 체제 중에서는 대북 제재 체제가 유일하게 인도주의적 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시하였음.
 - 유엔 안보리는 결의 제2321호(2016) 제46항에서 제재위원회가 ‘북한 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또는 ‘관련 결의들의 목표에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재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any activity)도 건별로 면제할 수 있다고 결정함.
 - 이후 채택된 결의 제2371호(2017) 제26항, 제2375호(2017) 제26항, 제2397호(2017) 제25항에서도 이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음.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이하, 1718위원회³⁾)는 제2375호(2017) 채택 이후인 2017년 12월 8일에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체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인도적 지원 제공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음(UN Security Council, 2017).

03.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한 남한 민간단체 사례의 함의

- ◆ 2016년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적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2018년 하반기까지 남한 민간단체들은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음.
 - 2018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019년까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만 기대어 기존의 교류·협력 사업 방식을 유지한 민간단체들은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였음.
 - 한 사례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유엔 결의안 제2397호 결의 이후 반출 승인 자체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해열제, 항생제 등 가장 기초적인 의약품을 북송하는 데에만 3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됨.
 - 물자 하나하나에 대해 전략물자, 유엔 제재, 미국 제재, 국내 제재(워치리스트) 등에 해당하는지 모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 데다가, 선박회사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⁴⁾으로 북한에 입항하는 사실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여 선적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2) 안보리는 이러한 제재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제제를 면제하였음. (i) 의료물자, 교육물자, 출판물, 뉴스 자료, 식량(‘특별한 인도적 상황’으로 한정)의 공급(UN Security Council, 1966, para, 3(d)), (ii) 연금, 의료·인도주의·교육 목적, 식량(‘특별한 인도적 상황’으로 한정)에 대한 지불(UN Security Council, 1966, para, 4), (iii) 예외적인 인도적 근거에 따른 여행(UN Security Council, 1966, S/RES/232, para, 5).

3) 2006년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한 후 유엔 안보리가 강제적인 처벌을 내용으로 한 결의 제1718호를 채택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이 이 결의를 잘 따르는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서 흔히 1718위원회라고 부른다. 인도주의적 면제에 대한 승인도 이 위원회의 권한이다.

4) 직접 제재를 넘어 제재 대상의 기업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기업까지도 제재를 하는 방식. ‘제3자 제재’라고도 함(전성필, 2021).

- ◆ 국제기구 및 국제 NGO들이 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남한 민간단체에 알려지면서 유엔 면제 승인 활용이 이러한 물리적 장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함.
 - 가장 먼저 승인받은 기관은 유니세프(UNICEF)로 2018년 8월 27일에 신청하여 약 2개월 만에 승인을 받음. 승인받은 물자는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품목(약 5억 2천여만 원 상당)으로 총 35종이었고, 승인 물품에는 엑스레이 장비, 냉동트럭, 실험실 장비, 수술실 기구, 백신 저온 유지 장치 등이 포함됨.
 - 신청일 기준으로는 2018년 2월에 가장 먼저 제재 면제 신청을 시도한 유진벨재단이 9개월 만인 2018년 11월 30일에 면제 승인을 받았음. 이때 승인받은 물품들은 결핵 환자용 조립식 병동 건설에 필요한 물자였음(홍국기, 2018).
- ◆ 2018년 8월 6일 유엔 1718위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이후 통일부도 '대북 반출 물품 제재 면제 요청 신청서'라는 서식을 만들면서 남한의 민간단체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하기 시작함.
 - 2021년 6월 현재까지 1718위원회의 인도적 면제 승인을 받은 사업은 총 76개이며 이 중 66건이 공개되었는데, 공개된 목록 중 남한 정부를 경로로 하여 승인받은 사업은 4개 기관 5건임.⁵⁾

〈표 1〉 유엔 면제 승인을 받은 남한 관련 민간단체 현황(2021년 6월 현재 유효 사업)

구분	단체	승인 물자(승인일)
대한민국 정부 경유	남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 코로나19 관련 물자(2020. 7. 17.) •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을 위한 의료장비(2020. 7. 22.)
	남한(경기도)	• 유리 온실 시스템 및 관련 품목, 남포, 평안남도 취약계층 영양 개선 사업(2020. 8. 4.)
	남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치과 의료장비(2020. 8. 13.)
	남한	• 식수 개선(2021. 1. 22.)
직접 신청 (한국과 연계된 국제 NGO)	유진벨재단	• 다재 내성 결핵 관련 물자 [2018. 11. 29.(2019. 1. 18.)/2019. 8. 9./2020. 1. 30./202. 6. 5.]*
	월드비전인터내셔널	• 시멘트, 배관 자재 110종(2019. 1. 30.) • 우물 펌프, 원통통, GI 파이프, 알루미늄 우물 덮개 73개 품목/WASH 프로젝트 자재 ⁶⁾ (2019. 7. 22.)
	선양하나	• 평행봉 등 물리치료 기구, 척추측만계 등 재활의료기기(2019. 9. 4.)
	샘복지재단	• 의료장비, 의약품, 영양 강화 식품, 의학적서 등(2020. 2. 7.)

*주: 유진벨재단이 2018년 2월 19일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을 때 유엔 1718위원회는 일부 물품을 누락하여 승인을 했고, 이에 유진벨재단은 추가 보충 설명을 통해 2차에 걸쳐 승인을 받았음.

자료: UN Security Council. (2021). Humanitarian Exemption(s) in Effect.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humanitarian-exemption-requests>에서 2021. 6. 1.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5) 유엔 1718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유효한 사업 목록을 게시하고 있는데, 만기일이 지난 국가 및 기관의 사업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롭게 승인한 사업을 계속 갱신하여 공개하고 있음. 또한 신청 기관에서 승인 조건으로 유엔 1718위원회 홈페이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승인이 되더라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음. 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6월 당시 총 76개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그동안 게시된 승인 사업을 삭제 전에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총 66건이었음. 10건은 당사자 요청에 따라 비공개한 것으로 추정됨.

6) WASH는 '씻다'는 뜻을 지니는 일반명사이면서, 동시에 식수(drinking Water), 공중위생(Sanitation), 개인위생(Hygien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로 위생적인 물 사용을 위한 국제개발사업을 의미한다.

- 유엔에 비공개를 요청한 사업으로 추정되는 10건 중에서 확인된 남한 민간단체는 2019년 11월 26일 승인을 받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19년 12월 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20년 4월 30일 국제푸른나무, 그리고 A단체⁷⁾ 등이 있음(이승현, 2020; 장아영, 2020).
- ◆ 남한 민간단체들의 경험 사례를 분석한 결과,⁸⁾ 유엔 1718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긴급성-긴급하고 취약계층이 표적 대상인 사업임을 어필하는 것-과 투명성-정권을 위한 전용의 위험성이 없음-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등에서 승인과 불승인 사례의 차이가 나타남.
 - 유엔 1718위원회는 총 15개 국가,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면제 승인은 1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결정함.
 - 사안별로 각 위원의 해석과 입장이 달라 이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함.
 - 긴급성과 투명성은 유엔 1718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요소들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
 -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97호의 목적은 북한이 WMD(Weapon Massive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를 궁극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도적 지원조차도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목표임.
 - 순수한 목적의 인도 지원 물자라는 것을 소명함과 더불어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물자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쓰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증빙이 필요함.
 - 사례 분석 결과, 신청서상의 요구 조건을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 이상으로 긴급하고 취약계층이 표적 대상인 사업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배분 대상을 명확히 부각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신청서에 제출한 사업명을 '아동 및 취약계층 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장비 기증 사업'으로 하여 면제받을 물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품으로 수혜자에게 어떠한 인도적 상황 개선이 이뤄질 것인가를 요약해서 보여 주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승인을 받음.
 - 다른 민간단체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노인, 노약자, 장애인, 만성 영양실조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정해 북한의 취약계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 승인에 효과적이었음.
 - D단체는 아예 수혜 대상을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정 농촌 지역의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어린이 몇 명으로 한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수행 사업의 명확성을 드러내면서 필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임.
 - 수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분석됨. 해당 지역의 식량 부족 현황이나 영양 및 건강 상태 등의 지표를 제시한 승인 사례가 있음. 이 자료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기관 등에서 발표한 북한의 영양, 건강, 경제 지표 등에서 추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관련 수치를 언급하면서 신청 사업을 통해 그 목표들의 달성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는 전략이 유효하였음.

7) 비공개를 요청하여 A단체로 표기함.

8) 이 글에서는 남한 민간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음. 유엔 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4개 기관(5개 사업)과 비공개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4개 기관이 주요 분석 대상임.

-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보다 물자의 성격과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승인된 사례들을 볼 때, 평양 내로 반입되는 물자 지원 사업도 특권층의 전용 위험을 없애기 위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1718위원회를 설득한 바 있음.
 - 사례를 보면 물자 복송 이후 단체 관계자들이 1년 내에 4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고 방문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여 물자가 해당 장소에 확실히 입고되어 잘 활용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었음.
 - 만약 냉각된 남북 관계로 인하여 단체 관계자의 방북이 미뤄지거나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장 방문이 가능한 해외 동포가 협업할 수 있음을 강조함. B단체는 남한 국적자보다 북한 방문이 수월한 중국 동포를 포함한 해외 교포들로 구성된 지부를 중국에 개설하여 이들을 투명성 확보 요원으로 제시하였고, 아예 외국인을 신청 사업의 전문가로 제시하는 등 모니터링 구성원을 확실하게 적시하여 승인을 받음.
 -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국제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도 하였는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의 북한 담당자를 물자 확인을 위한 인력으로 제시하였음.
- 국제사회에서는 남북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설득하는 것은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법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접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기구 등의 지표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언어로 유엔 1718위원회 회원국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04. 나가며

- ◆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으로 현재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경제 협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제한되고 있음.
 -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이후 대규모 남북 교류·협력은 상호 이해를 촉진시켰으며, 갈등 국면에서도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남북 갈등의 주요한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주의적 협력의 긍정적인 효과는 북한 당국을 평화와 번영의 장기 비전에 기초하여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개혁·개방이 주는 긍정적인 생활 향상의 기대를 주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장기적 방향으로 이끄는 것임.
- ◆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1718위원회를 설득할 경우 다양한 북한 주민의 민생 회복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할 수 있음.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기자재들은 인도주의적 면제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대북 제재 면제 물품들은 대부분이 의료, 영양, 생수 등 보건·복지 분야에 포함되는 영역과 그에 수반되는 물품으로 분석되었음. 보건·복지 영역은 인도주의적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우선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임.

- 코로나19 이후 백신을 비롯한 긴급의약품, 진단용 의료기기 등에 대한 북측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북한이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이며, 이를 현재의 갈등 국면에서 전환의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경윤. (2021. 7. 13).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은 영양부족...식량부족 국가로 재지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79400504>에서 2021. 9. 21. 인출.
- 이승현. (2020. 1. 25.). 제재면제 승인 계기로 남북협력 물꼬트길 바래.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13>에서 2021. 10. 1. 인출.
- 임소정. (2018).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아영. (2020. 5. 5.). 유엔 대북제재위, 장애인 농업 재활 NGO 면제 승인.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05051126341976에서 2021. 10. 1. 인출.
- 전성필. (2021. 7. 17.). [쉬운 우리말 쓰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다듬어 사용하면 이해 쉬워.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0538&code=13110000&sid1=sp>에서 2021. 10. 1. 인출.
- 조성은, 고경표, 도경옥, 엄주현, 조영주. (2021). 대북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국기. (2018. 11. 30.). 유엔, 유진벨재단 대북지원물자 제재면제 승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30108500504>에서 2021. 10. 1. 인출.
- UN Security Council. (1966). S/RES/232, UN Security Council.
- UN Security Council. (2017. 12. 8.). Security Council 1718 Sanctions Committee Underlines Humanitarian Exemptions Pursuant to Paragraph 26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2017), press release SC/13113. UN Security Council.
- UN Security Council. (2021). Humanitarian Exemption(s) in Effect.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humanitarian-exemption-requests>에서 2021. 6. 1. 인출.

집필 조성은 (복지국가연구단 연구위원) 문의: 044-287-8226